

# '91決算検査指摘事項措置結果報告

達 西 區

## 총괄적의견 조치사항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1	<p>세입·세출 결산의 종합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의존성(P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재정의 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54.8%) (총세입예산 383억중 조정교부금 101억, 보조금 109억)</li> <li>• 자치구 세입확보 노력 요망</li> </ul> </li> </ul> <p>☞ 기획감사실, 세무과</p>	<p>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의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기준수요액 산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정수요액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좀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하여 달서발전 5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li> <li>•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건설사업중 많은 부분을 보조금으로 시행하였음.</li> <li>• 앞으로 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도록 노력 하겠음</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② 91년 구세 목표액 7,074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자주재원확보 방안으로 연초에 “91 세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구의 세정 지침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91. 9. 12 ~ 9. 30 기간중 투기성재산 및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탈루.</p> <p>은닉세원을 조사하고 과소납부 세액을 추징한 결과 91년 12월말 현재 7,225백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7,074백만원보다 151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음.</p> <p>③ 세목별 추진실적</p> <p>○ 재 산 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2,306백만원</li> <li>• 실 적 : 2,313백만원 (100.3%)</li> <li>•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증축 건물조사</li> <li>-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입력철저</li> <li>- 소유권 변동, 용도변경 조사</li> </ul> </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합토지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 표 : 2,514백만원</li><li>• 실 적 : 2,614백만원(103.9%)</li><li>• 추진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0. 6. 1이후 변동분 수정 및 전산입력</li><li>- 토지등급, 면적, 사용형태, 지목, 주민등록번호 등 세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조사 철저</li></ul></li></ul></li><li>○ 면 허 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 표 : 1,150백만원</li><li>• 실 적 : 1,183백만원(102.2%)</li><li>• 추진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허가 부서 면허, 허가분 통수보 철저 및 조기자료 발취</li></ul></li></ul></li><li>○ 사업소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 표 : 1,042백만원</li><li>• 실 적 : 1,109백만원(106.4%)</li><li>• 추진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0평이상 신. 증축 건물조사</li><li>- 50인이상 사업체 조사</li></ul></li></ul></li></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재정의 비포괄성(P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예산(특별회계)으로 달서구청에서 시행한 공단조성사업(184억), 토지구획정리사업(28백만원), 도시교통사업(150백만)등의 집행효과는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크므로 결산서 또는 부속서류에 별도 표기</li> <li>☞ 지역경제과, 건설과</li> </ul>	<p>○ 사업명 : 성서공단 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지 : 256필(282,162㎡)</li> <li>- 지장물 : 건물 10동의 5종</li> </ul> </li> <li>• 사업비 : 184억</li> <li>•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li> <li>- 계획공단조성으로 능률향상과 경쟁력 배양</li> <li>- 도시공간의 미적 환경개선 효과</li> <li>- 고용기회의 증대와 시민소득의 향상</li> <li>- 공업의 전문단지화로 직접효과를 제고</li> </ul> </li> <li>○ 토지구획 정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요 : 아스팔트 덧씌우기</li> <li>B = 36m, L = 100m</li> <li>- 사업비 : 28백만원</li> </ul> </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data-bbox="837 347 1284 907">- 효 과 : 외릉로 대명천 교통확장에 따른 상하류 구매에 따라 상부노면과 고저차가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기존교량 노면과 접속도로 노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시행</p> <p data-bbox="798 963 997 996">○ 도로교통사업</p> <p data-bbox="837 1041 1276 1075">- 개 요 :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p> <p data-bbox="837 1108 1109 1142">- 사업비 : 150백만원</p> <p data-bbox="837 1176 1276 1467">- 목 적 : 도로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교통공학적 기법으로 개선하여 교통소통 능력 극대화 및 교통사고 예방</p> <p data-bbox="837 1500 1268 1601">- 위 치 : 본리네거리, 내당네거리, 감삼네거리</p> <p data-bbox="790 1657 1268 1758">※ 지적사항과 같이 '92회계년도 부터 별도표기 조치 하겠음.</p>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행정사무의 귀속성(P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위임사무(예: 시세과징-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가 구청의 주요업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재정 및 인력확보 요망</li> </ul> <p>☞ 기획감사실, 총무과</p>	<p>○ 정기 조직진단시 부서간 업무량 판단에 의거 검토하겠음</p>												
2	<p>예산확보 노력의 점검</p> <p>○ 지방세(P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함</li> </ul> <p>(단위: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422 1064 853 1265"> <thead> <tr> <th>구 분</th> <th>징 수 결정액</th> <th>징 수 액</th> <th>징 수 율</th> </tr> </thead> <tbody> <tr> <td>구 세</td> <td>427,868</td> <td>5,094</td> <td>1.2%</td> </tr> <tr> <td>시 세</td> <td>1,921,981</td> <td>128,288</td> <td>6.6%</td> </tr> </tbody> </table>	구 분	징 수 결정액	징 수 액	징 수 율	구 세	427,868	5,094	1.2%	시 세	1,921,981	128,288	6.6%	<p>○ 과년도(86~90년도분)체납액 구세 징수 결정액 427,868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5,094천원이며 과오납환불액 27,223천원으로 실질적인 징수율은 7.6%이며 시세 징수결정액 1,921,981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128,288천원이며 과오납금 환불액이 244,205천원으로 실질적인 징수율은 19.4%로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88. 1. 1일 달서구청 개청당시 서구와 남구에서 이관된 체납세로 공부상에는 체납세로 남아 있으나 체납자의 행선지 추적 및 재산조회 결과 행선지 불명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이 대부분이며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하고 있으며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음.</p>
구 분	징 수 결정액	징 수 액	징 수 율											
구 세	427,868	5,094	1.2%											
시 세	1,921,981	128,288	6.6%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 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산세 등 고액 체납세(15건, 31,953천원)수납 독려</li></ul>	<p>○ 고액체납자 건당 100만원이상 죽전동 335-25 이종경외 2건, 5,838천원은 현재 무재산이며 장기동 173 (주)한남교역외 3건 5,463천원은 부도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며 상인동 196-9 황상철외 6건 16,364천원은 고질체납자로 소유부동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여 계속 독려중에 있으며 본동 712 한우주택 4,288천원은 법정관리대상으로 98년도에는 징수가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세무과 직원 보강</li><li>• 세무전문직 양성시급</li><li>• 행정전산망의 유기적 협조필요 (타 시.도와 협조 전무)</li><li>• 동기소 통합문제 (징세업무 애로, 민원인 불편)</li></ul> <p>☞ 세무과</p>	<p>○ 상급부서에 건의중이며, 특히 행정전산망의 유기적 협조에 있어서 재산조회는 현재 협조가 가능</p>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세외수입 (P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년도 수입징수율 저조 (단위 : 천원)</li> </ul> <table border="1" data-bbox="408 533 834 640"> <thead> <tr> <th>징수결정액</th> <th>징 수 액</th> <th>징수율 (%)</th> </tr> </thead> <tbody> <tr> <td>172, 192</td> <td>40, 407</td> <td>23. 4</td> </tr> </tbody> </table> <p>☞ 세무과</p>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	172, 192	40, 407	23. 4	<p>○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함</p> <p>91년도 구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은 172,192천원, 징수액 40,407천원, 체납액 118,741천원 징수율 23.4%로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p> <p>①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체납액은 60,234천원으로 체납자의 행선지를 추적한 결과 행선지 불명, 이사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이 대부분이며 방문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고(2,000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대부분) 단전, 단수 등 강제징수 할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p> <p>② 주차위반의 경우 체납액 12,000천원으로 납기가 경과하여도 가산금이 없고 경찰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과는 달리 벌점등 처벌조항이 없어 납세자와 안이한 생각으로 납부의욕을 저하시키는 현실이며 차량조회와 행선지 추적으로 340건 10,540천원 상당의 차량원부를 압류한 상태이고 행불 등은 지속적으로 추적 조회하고 있음.</p>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						
172, 192	40, 407	23. 4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③ 특정건축물과태료의 경우 과년도 분 체납액은 28,424천원으로 92년 10월 19일 179,12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28,245천원은 당 좌수표 및 약속어음(지급기일 92. 12. 28)으로 징수하여 대구 은행 달서구청 출장소에 보관중이며 연말까지는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p>																		
	<p>• 과태료 수수료 수납액 수납 독려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27 1030 753 1249"> <thead> <tr> <th>구 분</th> <th>91미수납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td> <td>99,510</td> </tr> <tr> <td>폐기물 수수료</td> <td>36,344</td> </tr> </tbody> </table> <p>—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교통관리공단 시설로 업무효율성 제고 ☞ 지역교통과, 청소과</p>	구 분	91미수납액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99,510	폐기물 수수료	36,344	<p>○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계획 수립(교기 30420-1159 '92. 10. 19)구청간 소표를 교환 '92. 12. 31까지 특별징수 추진중</p> <p>○ '92. 10. 31까지 체납차량에 대하여 5,381건 압류조치</p> <p>&lt;폐기물 수수료&gt;</p> <p>○ 년도별 징수결정액 (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805 1326 1284 1433"> <thead> <tr> <th>91년</th> <th>90년</th> </tr> </thead> <tbody> <tr> <td>789,198,070</td> <td>571,897,710</td> </tr> </tbody> </table> <p>○ 년도별 수납액 (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805 1518 1284 1626"> <thead> <tr> <th>91년</th> <th>90년</th> </tr> </thead> <tbody> <tr> <td>752,854,090</td> <td>546,183,240</td> </tr> </tbody> </table> <p>○ 년도별 체납액 (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805 1711 1284 1818"> <thead> <tr> <th>91년</th> <th>90년</th> </tr> </thead> <tbody> <tr> <td>36,343,980</td> <td>25,714,470</td> </tr> </tbody> </table>	91년	90년	789,198,070	571,897,710	91년	90년	752,854,090	546,183,240	91년	90년	36,343,980	25,714,470
구 분	91미수납액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99,510																			
폐기물 수수료	36,344																			
91년	90년																			
789,198,070	571,897,710																			
91년	90년																			
752,854,090	546,183,240																			
91년	90년																			
36,343,980	25,714,470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자의 행선지를 추적한 결과 행선지 불명, 이사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이 대부분이므로 폐기물수수료 과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인력부족으로 방문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으로 징수하고있음.</p>
	<p>○ 조정교부금(P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도 조정교부금 확보액은 10,104백만원으로 이는 중구를 제외한 6개구청 배정액 평균치 11,856백만원에 미달되므로 적극적인 확보노력이 요망됨</li> </ul> <p>☞ 기획감사실</p>	<p>○ 배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교부금은 매년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구청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각구가 징수한 상기 세목의 징수금중 52%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정교부금은 구청간 재정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li> <li>• 산정기준은 의원정수, 투표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생활보호자수, 산업인구수, 도로의 연장, 행정구역 면적, 민방위대원수 등을 측정단위로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고 추가하여 실수요액을 반영 보정하고 있음.</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근거 : 대구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p> <p>○ 산정방법</p> $\boxed{\text{기 준}} \quad - \quad \boxed{\text{기 준}} \quad = \quad \boxed{\text{재 원}}$ <p style="text-align: center;">수요액                      수입액                      부족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준수요액 : 측정단위에 의한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li><li>• 기준수입액 : 기초수입액(지방세 + 경상적 세외수입) + 정산수입액(전전년도 결산액)</li></ul> <p>○ 조정교부금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의 확보를 위해 교부금 산정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시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li></ul> <p>○ 동구, 북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은 이유는 동구, 북구는 우리구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행정기구, 구의원 수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지방세 수입 신장율은 우리구보다 낮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p>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청은 구세 신장율이 타구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앞으로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P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10,993백만원으로 90년도 12,331백만원 대비 10.85%감소되었음(사업개발 미흡)</li> <li>• 지역개발을 위한 자치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노력 요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달서발전 5개년계획 등을 근간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시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채 및 채무부담 공사 (P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활용(지방채)</li> <li>☞ 건축과, 건설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송현지구(매자골)1개소임</li> <li>○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년도에는 소방도로 2건을 사업추진 완료하여 총소요 사업비 11억원중 2억7천만원의 지방채(재특자금)를 활용하였으며,</li> <li>○ 92년도에는 소방도로 3건을 사업추진하면서 총소요사업비 14억3천만원중 9억5천1백만원의 지방채(재특자금)를 활용하고 있음.</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숙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활용필요(채무부담공사)</li> </ul> <p>☞ 건설과, 건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더 많은 지방채를 활용하여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음.</li> <li>○ 채무부담공사 활용은 사업우선순위와 구재정을 감안,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의 여건변화 및 중소기업의 부담가중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li> </ul>
3	<p><b>예산집행의 효율성 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절감 노력 미흡 (P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시 매월 구매하는 물품가격이 일정금액의 단가가 계속 적용되는 것은 형식적인 견적서 첨부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li> </ul> </li> </ul> <p>☞ 재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1호 및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조사한 거래 실례가격과 한국용용통계조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월간유통물가 정보지를 대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며, 추후부터 상용물품에 대하여는 공동구매등으로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회보인 “달서소식”은 좀더 양질의 지질로 제작하고 관내 우수업체의 광고물을 게재하여 광고료 수입으로 반회보 제작, 예산에 충당할 것을 건의</li> </ul> <p>☞ 총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남구청에서 관내 업체의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료 수입을 발행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여 왔으나, 반회보에 광고된 모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등 광고업자 선정의 어려움과 행정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중단한 상태임.</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한편, 우리구 반회보인 “달서소식”은 지난해 내무부에서 전국 반회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반회보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 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 세대당 1부(90,000부)기준으로 발간하던 것을 가구당 1부(65,000부)기준으로 발간, 이웃과 윤독하도록 하여 월 1,44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p>
	<p>○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공사(P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도 시행 : 61건, 921,404천원</li> <li>• 긴밀협의 굴착허가 요망</li> <li>•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나 전문성 결여, 통행불편 등 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됨</li> </ul> <p>☞ 건설과</p>	<p>○ 도시가스 원인자 복구는 구청에서 복구에 대한 착공계 및 공사감독을 지정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완료시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에 문제가 일어나 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p>
4	<p>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p> <p>○ 91년도 추진 주요시책사업(P 2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두류축제 개최</li> <li>•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li> <li>•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li> <li>•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li> <li>• 대화행정 확대실시</li> <li>• 새질서, 새생활 실천</li> </ul> </div>	<p>[제3회 두류축제 개최]</p> <p>&lt;잘 된 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즐기는 범구민 축제화</li> <li>○ 달구별 축제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추진</li> <li>○ 종목별 시상제를 통한 동간 과열경쟁방지</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시책의 시행이 요망됨</p> <p>☞ 문화보실, 가정복지과, 보건소, 총무과</p>	<p>&lt;문 제 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체육행사 및 전통문화 발굴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li></ul> <p>&lt;대책 및 의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달구벌축제와 구축제를 동일기간내 종합축제로 개최하여 경비절감 및 효과제고</li><li>○ 각종 체육행사는 구축제로 이관시키고 달구벌축제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만을 주관 운영함으로써 전시민의 축제로 연계</li></ul> <p>[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li><li>• 대상 : 거택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무의탁노인 전원</li><li>• 사업비확대 : 1인당 14만원</li><li>• 내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초상사진 천달 : 4만원</li><li>- 생일상 : 4만원</li><li>- 선 물 : 1만원</li><li>- 용 돈 : 5만원</li></ul></li></ul> <p>⇒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 증진 확대</p>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동거부부 합동 결혼식]</p> <p>&lt;추진 실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92. 5. 19</li> <li>○ 장소 : 복지회관 대강당</li> <li>○ 대상 : 저소득층 동거부부 10쌍</li> <li>○ 예산 : 1,000천원 (1인당 100천원)</li> </ul> <p>&lt;문 제 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매년 10쌍 내외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진촬영비는 별도로 본인 부담하고 있음.</li> </ul> <p>&lt;대 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이 극빈한 동거부부에게 무료결혼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1인당 100천원으로 다소부족한 편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대상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사진촬영비도 기본으로 2매정도는 구에서 부담할 계획에 있음.</li> </ul> <p>[전염병 예방활동 강화]</p> <p>&lt;목 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구민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취약지 방역</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소독을 실시 구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구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함.</p> <p>&lt;목표 대실적&gt;</p>

구 분	목 표 (명)	실 적 (명)	비 율	비 고
무료예방접종	53,420	59,442	111.2%	1~12월
유료접종	155,400	192,160	123.6%	"
방역소독	975회	931회	95.4%	2~9월
보균자색출사업	10,422	20,839	199.9%	1~12월

<성 과 분 석 >

- 전염병예방활동 사업은 계획 대 실적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었음

[대화행정 확대실시]

- 구정보고회 : 총 102회, 17,450명  
(초청순회, 집합 등)
- 구민과의 대화 : 총 592명 119,760명  
(계층별 대화)

<지역주민 여론 수렴 >

- 여론모니터 운영 : 34명(동별 2명)
- 1일 명예 동장제 운영 : 6회 105명
- 대학생 자율봉사단 운영 : 40명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반상회 운영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반상회 운영 : 12회 56건 상담 (생활민원)</li> <li>○ 통. 반장 사기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창, 산업시찰 : 148명 12,160천원</li> <li>• 자녀장학금 지원 : 55명 27,858천원</li> </ul> </li> </ul> <p>〈시 민 교 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 반장 교육 : 2,320명</li> <li>○ 바르게살기위원 : 210명</li> <li>○ 위 생 업 주 : 940명</li> <li>○ 부 동 산 중개인 : 230명</li> </ul> <p>[ 새질서, 새생활 실천 ]</p> <p>〈자율참여 분위기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152회 124천원</li> <li>○ 각종 홍보물 제작 : 36종 980천매</li> </ul> <p>〈민생치안 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방법활동 지원 : 18개대 793명 189백만원</li> <li>○ 모범 방법대원 표창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 창 : 3개대 600천원</li> <li>• 간담회 : 18회 843명</li> </ul> </li> <li>○ 전경대, 기업체와 자매결연 지원 : 5개업체 6,000천원</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범인성 유해환경 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시설물 정비 : 2,849개소</li> <li>○接客업소 구분화 관리 운영 : 모범, 자율, 지도업소</li> <li>○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 관리카드 비치 유관기관과 공동관리</li> </ul> <p>〈거리교통질서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페인 전개 : 15개지점 24회 27,540명</li> <li>○ 질서계도 : 56개지점 78회 52,470명</li> </ul> <p>〈환경 오염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배출업소 지속단속 : 3개반 10명</li> <li>○ 환경 홍보 팸프렛 배포 및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팸프렛 제작 배포 : 10종 100,000매</li> <li>• 간 담 회 : 2회 80명</li> </ul> </li> </ul>
	<p>○ 91년도 추진 주요 주민숙원 사업 (P 28)</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li> <li>• 송현1동 매자골 도로개설공사</li> <li>• 월배3동 진월국교 진입도로 개설공사</li> <li>• 대명천 복개공사</li> <li>• 송현2동 하수도 정비</li> <li>• 월배로 하수도 본관설치 및 인도 조성공사</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에는 구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li> <li>○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주민수해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재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수렴토록 하겠음</li> </ul>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의 무원칙성</li> <li>• 지속적인 장·단기 사업개발의 필요성</li> <li>• 주민의견 수렴을 절차의 제도 보완을 요함</li> </ul> <p>☞ 기획감사실, 건설과</p>	
5	<p>기 타 사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서공단 조성사업 (P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단지(부지 218만평, 1,028개업체 입주)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공해 방지 대책은?</li> </ul> </li> </ul> <p>☞ 환경보호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서류검토 신중</li> <li>○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시 검사 철저</li> <li>○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및 채수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단지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제반문제 (P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문제 : 공업폐수, 생활하수, 대기오염등</li> </ul> </li> </ul> <p>☞ 환경보호과, 청소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대기배출업소 집중단속 및 공해 검사 의뢰</li> <li>○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지속화</li>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해소</li> <li>※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시주관)</li> </ul> <p>- '92. 12말 준공예정</p>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data-bbox="810 338 1027 371">&lt;배출업소 현황&gt;</p> <p data-bbox="1086 416 1289 450">91. 12. 31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810 483 1289 685"> <thead> <tr> <th rowspan="2">계</th> <th colspan="2">폐수배출업소</th> <th colspan="2">대기배출업소</th> </tr> <tr> <th>4 종</th> <th>5 종</th> <th>4 종</th> <th>5 종</th> </tr> </thead> <tbody> <tr> <td>244</td> <td>1</td> <td>130</td> <td>23</td> <td>90</td> </tr> </tbody> </table> <p data-bbox="810 730 1007 763">&lt;'91단속 실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업소수 : 373개업소</li> <li>○ 위반업소수 : 136개업소</li> <li>○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취소 : 1</li> <li>• 폐쇄명령 : 15</li> <li>• 조업정지 : 11</li> <li>• 개선명령 : 44</li> <li>• 시정지시 및 경고 : 41</li> <li>• 고 발 : 24</li> </ul> </li> <li>○ 배출부과금 부과 : 27건 16,774,210원</li> <li>○ 과태료부과 : 27건 6,900,000천원</li> </ul> <p data-bbox="810 1469 1038 1503">&lt;중점 단속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가동</li> <li>○ 폐수무단방류등 비정상 가동 행위</li> <li>○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 가동 행위</li> <li>○ 자가측정 이행 및 기록 유지</li> </ul>	계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4 종	5 종	4 종	5 종	244	1	130	23	90
계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4 종	5 종	4 종	5 종												
244	1	130	23	90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아파트 조성지구에 대한 방법 및 민원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 문제</li> <li>• 상기 제반문제에 대한 주민애로 사항의 수렴절차와 개선 및 상부에 개선 건의등의 대책이 미흡함</li> </ul> <p>☞ 총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우리구에는 상인지구, 성서지구, 대곡지구, 장기지구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계획임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동청사 5개년 계획, 달서발전 5개년 계획)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li> <li>• 민원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동의 분동을 예상하여 동청사 조기신축</li> <li>- 행정수요 폭주시 인력 및 장비 지원</li> </ul> </li> <li>•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가로등, 보안등, 횡단 보도등)</li> <li>•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대책 조기수립 시행</li> <li>• 교통대책 수립( 시내버스 노선조정, 신호등 조기설치, 주차시설 확충등)</li> <li>○ 그러나, 내무부 지침상 행정운영동의 분동승인 신청기준이 인구 4만명(상주 인구 또는 주민등록 인구)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분동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음.</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 월배공단 조성사업 (P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단조성사업 중단으로 계획 기간 중 구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예상됨</li></ul> <p>☞ 지역경제과</p>	<p>○ 국토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별 목적을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쳐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에 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반하는 토지이용은 불가능하므로 재산권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기관이 대책을 수립한 사례는 아직 어느기관, 관계법에도 없어 현행여건으로 볼때 피해대책은 어렵다고 봄.</p>

<분야별 조치사항>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1	<p>지방세 분야(P 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과세누락</li> <li>☞ 세무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 득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 : 도원동 1049번지 박병오외 1명</li> <li>• 세 액 : 303,440원</li> <li>• 조 치 결 과 : 92. 9. 30 납기 과세필</li> </ul> </li> <li>○ 재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 : 도원동 1049번지 박병오외 1명</li> <li>• 세 액 : 87,190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포함)</li> <li>• 조 치 결 과 : 92. 9. 30 납기 과세필</li> </ul> </li> <li>○ 면 허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 : 서구 원대1가 645번지 신수경외 2인</li> <li>• 세 액 : 54,000원</li> <li>• 조 치 결 과 : 92. 9. 30 납기 과세필</li> </ul> </li> </ul>
2	<p>예산관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불용액 (계상후 잔액 불용처리) (P 50)</li> <li>• 동사무소 구내선로 개체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 통신관리, 주요사업 비-412(불용액 1,500,000원)</li> </ul> </li> <li>☞ 기획감사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도 동청사 구내통신 선로 노후동에 키폰전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2중 사업을 피하기 위해 '91동사무소 구내통신 선로 보수예산 반납</li> </ul>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수당</li> <li>- 과목 : 농지개량관리, 기본경상비-104</li> <li>(불용액 1,000,000원)</li> </ul> <p>☞ 지역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교부금(농림수산부)이 7월 예산반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미 개최로 예산 불용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륜차 책임 종합보험료</li> <li>- 과목 : 영림관리, 관서운영비-412</li> <li>(불용액 92,000원)</li> </ul> <p>☞ 지역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화경방 깊차 활용으로 이륜차 미 운행 및 고장정지로 보험금 불필요로 인한 불용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활동 동원 급식비 보상</li> <li>- 과목 : 민방위시설장비, 경상사업비 - 311</li> <li>(불용액 704,000원)</li> </ul> <p>☞ 민방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도는 커다란 민방위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륜차 책임 종합보험료</li> <li>- 과목 :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 245</li> <li>(불용액 94,000원)</li> </ul> <p>☞ 두류3동, 성서4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륜자동차(규격CT-100)을 89.12.28구입 사용하고 있어 91년도 당초예산에 이륜차 보험료를 계상하였으나 동직원중 이륜차 면허 소지자가 없어 보험료를 불입치 아니하였고 결산추경시 삭감처리 하였으나 못 하였음. (두류3동)</li> <li>○ 예산부족으로 미집행(성서4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 의자 구입비</li> <li>- 과목 :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 411</li> <li>(불용액 394,000원)</li> </ul> <p>☞ 송현1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동의 책상과 의자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91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수리, 사용 가능하여 예산반납</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사장(P 51)</li> <li>• 소송수수료 및 변호사 수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 법무관리, 경상사업비-221</li> <li>(불용액 2,254,840 원, 불용률 57%)</li> </ul> </li> </ul> <p>☞ 기획감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수행비 및 수수료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예산이므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333</li> <li>(불용액 39,208,000 원, 불용률 54%)</li> </ul> </li> </ul> <p>☞ 사 회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성지구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2,515세대, 10,800명) 입주시기가 91. 10월경으로 직업훈련비 소요판단의 부적절</li> <li>○ 영구임대 입주 및 영세민, 저소득시민, 관련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로 정확한 분석에 의한 직업 훈련비의 적정성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서공단조경지 지하수 급수전 전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 녹지관리, 기본경상비-241</li> <li>(불용액 1,503,340 원, 불용률 47%)</li> </ul> </li> </ul> <p>☞ 지역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서공단 급수전 고장으로 미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 영림관리, 주요사업비-412</li> <li>(불용액 8,104,000 원, 불용률 61%)</li> </ul> </li> </ul> <p>☞ 지역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흰불나방 2차 방제적기가 지나 산지의 흰불나방 방제의 효율성 결여로 2차방제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li> </ul>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건축물철거 이주대책 비 및 철거구호금</li> <li>- 과목 :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311 (불용액 2,500,000원, 불용률 83%)</li> </ul> <p>☞ 건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철거영세민 이주대책 지원금으로서 지급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li> <li>○ 지급대상자 발생을 감안 결산추경시 미삭감</li> <li>○ 향후 예산편성시 걱정을 기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기타)부대비</li> <li>- 과목 : 민방위시설장비, 주요사업비-413 (불용액 1,455,000원, 불용률 85%)</li> </ul> <p>☞ 민방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자가발전기 설치부대비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절감시킨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예산의 과다한 동채배정 집행(P 52)</li> <li>• 91년도 구청예산현액 39,103,165,950원중 2,843,205,430원이 각동에 재배정되어 집행</li> <li>• 예산집행 결산서 혼선 및 재배정 절차로 집행지연 우려</li> <li>• 불요불급한 과목을 제외하고 동자체예산에 편성토록 요망</li> </ul> <p>☞ 기획감사실, 총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하나 동장포괄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배정 하였음.</li> <li>○ 91년도 예산편성집행시 10건 191,636천원의 예산을 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그중 휴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복무관장 부서에 플계상하여야 하는 원칙에 의거 재배정이 불가피하며 전산업무 보조인부 임은 92년도 동본예산에 편성하였음.</li> </ul>

구 분	지적·건의·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그외 8건의 예산은 92년에는 제도가 없어지거나 필요예산이 아니므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위와 같은 예산이 소요될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본예산에 편성조치 할것임.</p> <p>(※ 91년도 재배정 현황 별첨)</p>
3	<p>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P 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에 시행한 사업(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적기에 집행, 주민 불편을 해소 하여야 함에도 시공상 어려움이 있는 동절기에 시행</li> </ul> </li> </ul> <p>☞ 본리동, 월배2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설계도 작성 애로(토목적TO없음)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미비사항에 관하여 전문부서인 건설과의 지도를 받아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li> <li>○ 공사실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장포괄사업비는 주민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예산집행시 적법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공사 시기,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음.</li> <li>• 인도차도블럭 콘크리트 공사는 인도차도블럭의 훼손이 있어 공사시기를 검토한 결과 타공사에 비하여 동절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li> </ul> </li> </ul>

구 분	지적 · 건의 · 개선사항	조 치 사 항
		<p>로 공사를 조속시 마무리 지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고 92. 12. 6 일에 착공하여 동월 20일에 준공하였음</p> <p>○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후 예산집행시 집행의 효율성과 주민숙원의 해결이라는 두목적을 고루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기 및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실시 하겠음</li> </ul>
	<p>○ 보안등 수선에 포괄사업비 과다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당초 예산에 보안등수선비를 계상 않고 제1회 추경시 24백만원 편성(91. 3. 7)</li> <li>• 따라서 시급히 요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할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수선에 과다집행함으로써 적정예산 편성 소홀</li> </ul> <p>☞ 건설과</p>	<p>○ 91년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로 누락</p> <p>○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음</p>

별 첨 1

91년도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재배정액	비 고	
항	세 항	세 세 항	목				
총무인사 행정	서관	무리	관운영 서비스	104	102,933	489,816	휴일근무수당
구행 운영	일선 조직운영	행정 운영	경상 사업비	108	50,964	50,964	전산업무보조인부임
"	"	"	"	311	20,400	20,400	자율방범대원야식비
지역안정	방범활동	기경	본상 비	311	40,456	40,456	유급방범대원보상금
지방의회	지방의회	주요	"	107	8,998	7,106	선거관련급식비
위원선거	의원선거	사업비	"	108	3,259	3,258	일용인부임
			"	211	3,014	2,856	국내여비
			"	221	8,680	510	수용비 및 수수료
			"	232	15,600	13,600	정보비
			"	234	5,820	3,570	특별관공비
가정복지	청소년 복지	경상 사업비	311	3,576	1,050		